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제2조 (기술정보수당)

-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4>
1. 전과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4>

제3조 (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군법무관수당)

-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0.8>

부칙 <제356호,198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호,198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198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4호,1987.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0호,198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0호,198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405호,1989.10.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부칙 <제406호,19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1990.3.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417호,19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199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19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5호,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호,199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5호,199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4호,199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6호,20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부칙 <제528호,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0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합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호,200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4호,2004.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6호,200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9호,200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200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3호,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9호,200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3호,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5호,200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1호,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0호,2010.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중전의 별표 2의 비교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34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0호,2012.6.1>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교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7호,2013.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4호,201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3호,201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9호,201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호,2017.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 ⑤ 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971호,201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6호,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 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호,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8호, 202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2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수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전의 별표 2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0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비교란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0000호,2024.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월액)
갑 중	1.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을 이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100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포화잠수훈련 또는 작전을 수행한 사람	영관이상: 443,5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421,200 원사 · 상사 · 중사: 416,500
	2.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영관 이상: 403,2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324,000 원사 · 상사 · 중사: 320,400
	3.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하사: 223,400 병사: 218,400
	4.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영관 이상: 245,5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205,900 원사 · 상사 · 중사: 202,600 하사: 143,800 병사: 138,800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영관 이상: 225,5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185,900 원사 · 상사 · 중사: 182,600
	6.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하사: 123,800 병사: 118,800
을 중	1.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영관 이상: 138,0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113,600 원사 · 상사 · 중사: 106,000 하사: 90,000 병사: 85,000
	2.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훈련을 한 사람	영관 이상: 95,0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79,000 원사 · 상사 · 중사: 74,000 하사: 60,000 병사: 55,000
	3.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절벽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90,0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74,000 원사 · 상사 · 중사: 69,000

		하사: 55,000 병사: 50,000
	4. 반기 6회 이상 계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영관 이상: 125,3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103,000 원사 · 상사 · 중사: 96,000 하사: 75,000 병사: 50,000
병 중	1.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영관 이상 : 37,000
	2.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29,000
	3.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원사 · 상사 · 중사 : 25,000 하사: 21,000 병사: 18,000
	4.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관으로 종사하는 사람	
	5.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운전하는 사람	
	7.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00. 00.>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월액)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	잠수함정의 승무원	영관: 952,000 대위: 742,000 중위·소위·준위: 650,000 원사·상사·중사: 650,000 하사: 600,000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함정탑재회전익 항공기 운용요원, 함정탑재 무인항공기(UAV)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영관 : 358,300원 대위 : 294,700원 중·소·준위 : 249,100원 원·상·중사 : 249,100원 하사 : 153,700원 병 : 32,700원
	2.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기동전대 요원	영관: 179,100 대위: 146,400 중위·소위·준위: 136,700 원사·상사·중사: 136,700 하사 : 95,600 병: 32,700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병)	수륙양용 캐도차량 승무원	영관: 14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22,000 원사·상사·중사: 110,000 하사: 84,000 병: 32,700
항공수당 (갑)	1.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안전·검열부서에 소속되어 전투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영관: 1,092,600 대위: 873,200 중위·소위: 671,100
	2.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안전·검열부서, 해군 항공전단에 소속되어 고정익항공기(전투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영관: 892,100 대위: 732,600 중위·소위: 580,800
	3. 고정익항공기 이외의 기종(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을 조종하는 조종사	영관 : 810,700원 대위(조종경력) 15년이상 : 810,700원 15년미만 : 665,500원 중·소위 : 528,000원 준위·부사관(조종경력) 15년이상 : 810,700원 10~15년 미만 : 665,500원 5~10년 미만 : 594,000원 5년미만 : 528,000원

항공수당 (을)	1.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비행전술장교 나.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다. 수송기 동승장교	영관: 737,000 대위: 605,000 중위·소위·준위: 480,000
	2.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상초계기 조종사 나. 전락정찰기 조종사 다.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영관: 524,000 대위: 389,000 중위·소위·준위: 296,000 부사관: 280,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	준위: 204,000 부사관: 194,000
	4.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병사	병: 40,000
항공수당 (병)	1. 전술항공통제장교 중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영관: 320,000 대위: 282,000 중위·소위: 218,000
	2. 비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피교육생: 185,000
	3. 비행근로의관으로서 월 1회 이상 동승비행을 한 사람	영관: 204,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77,000
	4. 업무수행상 항공기에 월 1회 이상 단순 동승한 조종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항공촬영사, 대통령전용기 객실승무원	영관: 177,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66,000 원사·상사·중사: 155,000 하사: 129,000
군인 등의 장려수당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토우, 현궁, 발칸, 천무, 다련장, 장애물 개척전차, 교량전차, 장갑 전투도저,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어트, 현무, 레포타, 국지방공레이다, 채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K211·K216·K316·K317·K318 등 화확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 미사일 및 BMP-3 사수,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 운용 요원	35,000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15년이상: 880,000 10년이상 15년미만: 770,000 5년이상 10년미만: 660,000 3년초과 5년미만: 550,000 ○ 군종장교

	10년 이상: 45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180,000 3년 초과 5년 미만: 120,000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 준사관 및 의무부사관(약사, 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수의사: 150,000 약사: 70,000 의료기사: 50,000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장교 및 준사관·부사관(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50,000
5. 특수분야 운용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가.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요격관제업무·교통관제업무·비행추적업무·위성운용업무·유도탄 교전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중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장비운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영상·계측기호 조기경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군인 - 10년 이상 영관: 13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20,000 부사관: 10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영관: 11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00,000 부사관: 90,000 - 3년 초과 5년 미만 영관: 100,000 대위·중위·소위·준위: 90,000 부사관: 80,000 ○ 군무원 - 5급 이상 및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10,000 - 6·7급 및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100,000 - 8·9급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90,000
5-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글로벌 호크) 조종사	180,000
6. 특수분야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보유자 가.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엇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잠수함정·일반함정 정비부대 및 동정비창·수	○ 기본 지급액 - 군인(3년 초과): 8만원 - 군무원: 6만원 ○ 가산금 - 기술사: 5만원 - 기능장 및 기사: 3만원 - 산업기사: 2만원

리창·해군군수사령부 합정기술연구소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특수무기(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TPQ-36·37, 포병탐지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K10·K211·K216·K316·K317·K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분야에서 조립·생산·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영상·계측기호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 중 전자계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시스템관리자·분석자·프로그래머 및 오퍼레이터로 한정한다)	장교: 30,000 부사관: 25,000
8.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전방 근무 부사관: 200,000. 다만,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 7만원, 부사관으로 3년 초과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월 5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전방 근무 부사관의 근무지역 및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기타 지역 근무 부사관: 150,000
9. 임용 후 복무기간이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로 한정한다)하는 전투기 조종사(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항공기 조종사	월 1,000,000원
10.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잠수함 승조역이 3년을 초과한 장교 및 부사관	4~6년차 : 월 300,000 7~9년차 : 월 400,000 10년차 이상 : 월 500,000
11. 비행부대 외의 부대·기관 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1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영관: 월 737,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737,000 15년 미만: 월 605,000 중위·소위: 월 480,000
12. 비행부대 외의 부대·기관 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2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영관: 월 576,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76,000

	외한다)을 한 사람	15년 미만: 월 428,000 중위·소위: 월 326,000
	13. 비행부대 외의 부대·기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 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3호에 해당되었던 사람과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영관 이상: 월 524,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24,000 15년 미만: 월 389,000 중위·소위: 월 296,000 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24,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389,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331,000 5년 미만: 월 296,000
	13-2. 13호에 해당되는 사람 외의 장성급 장교인 조 종사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 한다)을 한 사람	월 262,000
	14.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부 대의 피교육생, 잠수함정의 승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승무유지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 을 한 사람	영관: 월 422,000 대위: 월 340,000 중·소·준위: 월 271,000 원사·상사·중사: 월 228,000 하사: 월 189,000

비고

1.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1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대상자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9,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대상자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兵)은 출동일수 1일마다 4,000원을 지급한다.
3.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교의 수당지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부사관은 4년 이내로 한다.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3)에 따른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따른 해당 군무원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항공수당(갑) 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통상적인 임무수행이 아닌 특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격하는 경우에는 1회마다 1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6.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에 따른 조종사의 장려수당은 매년 1월에 1년분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역 전 휴가기간 및 전역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환수하고, 지급 당시 전역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 기간까지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당지급시기는 실제승조기간을 적용하여 3년을 초과하는 시기부터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기존 잠수함승조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승조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에게 지급했던 수당 지급자 중 정당한 이유없이 잠수함 근무를 그만두거나 승조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8.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승무원의 자격으로 잠수함에 파견 승조하여 임무수행을 하는 경우 출동가산금(출동일수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9. 공중근무자격 유지를 위하여 비행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상조계기 비행전술장교,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및 수송기 동승장교에 해당되었던 사람은 항공수당(을) 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전술항공통제장교에 해당되었던 사람은 항공수당(병) 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비행훈련을 실시한 월에만 분기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